

의안번호	2207509
의 퇴 인	서영석 의원
회 답 일	2025.2.3.
추계번호	25C02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4억 4,200만원(연평균 4억 8,8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자산관리사업 (안 제44조의2)	469	479	488	498	508	2,442	4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2 (자산관리사업)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이하 “자산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44조의2 (자산관리사업)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2024년 예산 기준 4억 6,0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관리사업은 현재 아동자립을 지원하는 아동 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고,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의 확대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12. 기준, 단위: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38조²⁾에서 규정하는 자립지원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제·금융 및 진로교육 등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2024년 예산 기준 5억 7,800만원)을 실시하고 있음³⁾
 -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⁴⁾(2024년 예산 기준 4억 6,000만원)을 운영하고 있음
 - 본 추계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준용하여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관리사업 비용으로 4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관리사업은 추계기간 동안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 자산관리사업 실시 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4.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4억 4,200만원(연평균 4억 8,800만원)으로 추계

2)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현행법 제38조제1항제2조에서는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사업의 자산 관리 및 사후 관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별도의 자산관리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4) 신탁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적 재원을 지출·관리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업이 실시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보호대상아동 등을 위한 아동자산관리사업	469	479	488	498	508	2,442	4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assembly.go.kr